

#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운영 내규

2023년 2월 21일 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전통의상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입학관리

**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** 전통의상학과 소속 교수들은 전통의상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 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**제4조 (교육과정)** 전통의상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며,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**제5조 (과목개설 및 필수교과목 이수)** 전통의상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며,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 전통의상 연구에 필수적인 아래의 교과목은 학위과정 중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.

필수 이수 내용	개설 교과목	필수 이수 과목수	
		석사과정 4과목	박사과정 6과목
한국복식사	한국복식사 한국복식사특론 한국고대복식사 I 한국고대복식사 II	택1	석사과정 필수 이수 4과목 외에, 왼쪽에 제시된 '개설 교과목' 중 임의의 2과목 추가 수강.
사료강독	복식사료강독 I 복식사료강독 II 한국복식사료연구 I 한국복식사료연구 II	택1	
유물보수 및 보존처리	복식유물보수 I 복식유물보수 II 유물보존처리	택1	
의복구성	한국의복구성 I 한국의복구성 II 한국의복구성특론	택1	
* '유물보수 및 보존처리'는 교과목 미개설 등 학과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충족 요건에서 면제 가능.			

**제6조 (교·강사 배정)** 각 교과목은 전통의상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·강사를 배정하며,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#### 제4장 논문지도

**제7조 (지도교수의 선정)**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#### 제5장 자격시험

**제8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**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.

1.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 1편 게재(① 단독논문 ② 공동논문은 지도교수와 2인 공저일 경우 100% 인정. 지도교수와 타 참여진의 공저일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참여진(n)의 수로 나눈 백분율(1/n%)만큼 인정(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% 인정). 지도교수 외의 연구자와 공저일 경우 참여진(n)의 수로 나눈 백분율(1/n%)만큼 인정(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% 인정).

1. 논문 1편당 2과목 면제.

1. 심사결과 '게재가(Accepted)' 시점부터 인정.

1. 박사과정은 학위논문심사 신청을 위해 갖춰야하는 '소논문 발표 1편' 충족 외에 별도의 논문을 발표해야 함.

**제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** 학칙에 따라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

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.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 되, 실기 교과목은 실기(작품제작)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** 전통의상학 연구에 필요한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한문 중 하나를 선택한다.

## 제6장 학위과정

**제11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** 석사학위 취득은 학위논문과 학위작품(작품제작보고서 제출) 중 하나를 선택한다.

**제12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**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3조 (학위논문 대체 석사학위자의 박사과정 진학)** 학위작품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, 다음의 조건 충족시 박사과정 입학자격을 부여한다.

1. 진학 전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소논문 1편 게재(① 단독논문 ② 공동논문은 지도교수와 2인 공저일 경우 100% 인정. 지도교수와 타 참여진의 공저일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참여진(n)의 수로 나눈 백분율(1/n%)만큼 인정(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% 인정). 지도교수 외의 연구자와 공저일 경우 참여진(n)의 수로 나눈 백분율(1/n%)만큼 인정(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% 인정).

1. 석사과정 중 종합학력시험 면제 적용을 받은 소논문 이외 별도의 논문을 발표해야 함.

1. 심사결과 ‘게재가(Accepted)’ 시점부터 인정.

##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**제14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** 석·박사과정 중 혹은 수료 후 적절한 시기에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.

**제15조 (예비발표)** 학위논문심사 최소 한 달 전까지 예비발표를 진행한다.

**제16조 (박사과정의 소논문 발표)** 박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, 혹은 중국 核心期刊 학술지에 소논문 1편을 발표한다.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① 단독논문 ② 공동논문은 지도교수와 2인 공저일 경우 100% 인정. 지도교수와 타 참여진의 공저일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참여진(n)의 수로 나눈 백분율(1/n%)만큼 인정(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% 인정). 지도교수 외의 연구자와 공저일 경우 참여진(n)의 수로 나눈 백분율(1/n%)만큼 인정(제1저자일 경우 타 참여진 수와 관계없이 70% 인정).

1. 심사결과 ‘게재가(Accepted)’ 시점부터 인정.

**제17조 (논문심사위원)**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.

**제18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**

1. 2인 이내 전시회 개최
2.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,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전국 규모의 공신력있는 공모전 입선 2회 이상 혹은 장려상 1회 이상 수상.

**제19조 (논문대체 제출)** 학과로 학위작품제작보고서(작품사진 포함 필수) 제본본과 국문 파일을 제출한다(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). 보고서는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(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).

##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**제20조 (의사결정 방식)**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0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칙(2023. 02. 21.)

제1조 (시행일) 이 운영 내규는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) 이 운영 내규는 2020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하며 적용한다.

제3조 (적용) 이 운영 내규는 2023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하며 적용한다.